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22

발의연월일: 2024. 11. 11.

발 의 자:윤한홍ㆍ이헌승ㆍ김종양

권성동ㆍ이종욱ㆍ서일준

주진우 · 송석준 · 김장겸

권영진 · 강민국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인정기관을 통해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가 커지고 있어 의과대학 신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역 소재 대학의 경우 물적·인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수도권 소재 의과대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향후, 인정기관의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방 소재 학교에 대해서는 완화된 평가·인증 기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지방 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 항) 중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를 "인정기관의 완화된 평가·인 증, 제4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5항의"로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학교 중 지방(「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소재 학교에 대하여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지방 소재 학교부터 적 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평가 등) ①・② (생	제11조의2(평가 등)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인정기		
	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		
	는 학교 중 지방(「수도권정비		
	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소재 학교에 대하여는 인정기		
	관의 평가·인증 기준과 방법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u>③</u> · <u>④</u> (생 략)	<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u>⑤</u>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	<u>⑥</u>		
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	인정기관의 완화된 평		
<u>항의</u>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u>가·인증, 제4항의 인정기관의</u>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u> 지정과 제5항의</u>		
령으로 정한다.			